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어르신의 **행복**을 지켜드리는 번호,
기억해주세요

노인학대신고 · 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29**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인권실천을 위한 선서

- 어르신에게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고,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지속적인 교육통해 인권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어르신에게 정서적학대, 언어적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학대, 경제적학대, 방임, 자기방임 으로 부터 보호하겠습니다.
- 어르신에게 안전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 어르신에게 자기결정권 뿐 아니라 선택권과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까지도 존중하겠습니다.
- 어르신에게 관련된 모든 정보는 보호의 목적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 입니다.
- 어르신에게 필요한 자원연계를 위해 지역사회와 협조하겠습니다.



시설생활노인 권리선언

- 시설운영 및 생활관련 정보를 제공 받고 입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
- 안락한 가정과 같은 환경과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및 노인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 부당한 신체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 및 사회적(종교,정치등) 관계에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이성교제, 성생활, 기호품 사용에 관한 자기 결정의 권리
- 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퇴소를 결정하고 퇴소후 거주지를 선택할 권리
- 시설 종사자와 동료 노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권리



노인학대란? 노인에게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기 쉬운 노인학대 사례

신체적 학대



저소득의 장남가족과 함께 살고있는 할아버지는 장남 내외가 일을 나가는 낮에는 실직한 손자와 함께 있었다. 알코올 중독인 손자는 수시로 할아버지에게 심부름을 시켰고, 할아버지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목을 조르고 팔을 비트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정서적 학대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는 큰아들부부와 함께 생활하였다. 며느리는 할머니 면전에서 “노인네 돈은 안 벌면서 밥은 얼마나 많이 먹는지” “병원비며 약값이며 감당이 안 된다” 며 수시로 농치를 주었다.

성적 학대



요양보호사 A는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요양시설의 거실에서 할아버지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행위를 반복함에 따라 할아버지가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경제적 학대



외지에서 사업을 하다 빚을 지고 고향으로 내려와 노부와 살게 된 아들은 상습적으로 노부에게 금품을 가로챘고, 노부에게 지급된 기초노령연금 등을 마음대로 유용하였다.

방임



할아버지의 젊은 시절 빈번한 가정폭력으로 배우자와 다른 자녀들은 모두 집을 떠나고 막내아들만이 남아 함께 생활해왔다. 그러나 중풍에 걸려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등 혼자 거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나, 막내아들은 인과응보라며 의식주 제공을 비롯한 부양을 거부하였다.

유기



장남과 차남은 노인성 질환이 있는 노부부양을 서로 미루며 서로의 집 앞에 모셔다 놓은 상황을 반복하였다. 추운 겨울날 집 밖에서 떨고 있는 노부를 이웃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노인학대 행위는 이렇게 처벌 받습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 **129** 또는 **1577-1389**

노인학대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안됩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노인학대 없는 세상, 우리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앞장서겠습니다.

